

# 중 예포장식품 라벨표준 수정안 발표

상하이지사

## 라벨표준 수정안의 주요 변경사항

• 지난 11월 26일,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<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>의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. 2018년 12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, 기존 GB 7718-2011과 비교하여 새로이 개정할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조항번호 순서 일부 조정
- 식품 속성 명칭의 정의 추가
- 생산일자 및 유효기한의 정의 수정
- 주요 표시면의 정의 삭제
- 식품 명칭의 표시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함
- 성분표의 표시 요구 수정
- 식품첨가제의 표시방식을 더욱 명확히 함
- 성분표 분류 표시의 요구를 수정하고 정량 표시의 요구 수정
- 강제 표시 내용의 글자, 부호, 숫자의 크기 및 해당 되는 포장재 혹은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 면적 수정
-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요구 수정
- 특수식품 표시 요구 추가
- 수입식품 표시 요구 추가
- 부록A 중 불규칙적인 포장재의 최대 표면 면적 계산법 추가
- 부록C "성분 정량 표시의 표시방식" 및 부록E "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식" 추가, 원 부록C가 부록D로 변경

## 달라진 조건에 맞는 마케팅 효과 노려야

- 수정안의 3.4 조항 및 3.5 조항에 따라 보건식품이 아닐 경우, 식품의 기능성을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.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때 보건식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절대 기능성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시한 것이다.
- 수정안의 7.2.2 조항에 따라 수입 예포장식품 원 라벨에 언급하는 적용 대상 섭취량, 식용방법 등 정보는 상응하는 중문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,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 원 라벨에 위 표시가 있을 경우, 반드시 중문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.
- 수정안의 7.3.2 조항에 따라 수입식품의 품질을 표시할 경우, 원산국(지역)의 표준 또는 법규 중에 규정하는 등급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했는데, 이 조항은 수출 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으로 보인다.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시행하는 등급 규정에 따라 식품등급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으므로 좋은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.
- 새로운 라벨 표준이 시행되면 여러 관련 규정이 수정될 예정으로, 수출 기업은 현재 이용 중인 중문라벨을 재검토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과정에서 aT 현지화 지원사업의 활용도 고려해 볼만하다. 본 사업을 통하여 성분, 중문라벨, 통관 등 종합적인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, 수출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.

**현행 GB7718 및 수정안 주요 변경 조항 대조표**

현행 GB7718	수정안	비고
<b>명칭 : 예포장식품 라벨통칙</b>	<b>명칭 : 예포장식품 라벨표준</b>	
<b>2.1 예포장식품 정의</b> 사전 정량 포장 또는 포장 재료 및 용기에 제조식품으로 사전 정량 포장 및 사전 정량으로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조된 것, 일정량 범위 내에서 통일된 중량 또는 체적 표시를 갖춘 식품을 포함함	<b>2.1 예포장식품 정의</b> 사전 정량 포장 또는 정량으로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조 식품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, 일정 범위 내에서 통일된 중량 또는 체적 표시를 갖춘 식품	
-	<b>2.3 속성 명칭</b> 식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,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고유적인 특성의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전용 명칭. 속성 명칭은 성분 특성, 공정 특성, 식품 유별 등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식품의 전속 특징에 대한 서술을 포함함	정의 추가
<b>2.4 생산일자(제조일자)</b> 최종 완제품이 제조된 날짜이며, 포장된 날짜 또는 캔 용기에 담긴 날짜도 포함함. 즉 식품을 포장재 또는 용기에 넣어 최종 판매 단위로 완성한 날짜임	<b>2.1 생산일자(제조일자)</b> 식품이 최종 완제품이 된 날짜	
<b>2.7 주요표시면</b> 예포장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눈에 띄는 면을 말함	-	삭제
<b>3.2</b> 선명하고 눈에 잘 띄며 오래 유지 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판단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함	<b>3.2</b> 선명하고 눈에 잘 띄며 오래 유지 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판단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함. 식품 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재(용기)와 분리해서는 안 됨	
<b>3.4</b>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, 과대,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구나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글자 크기 또는 색상의 차이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됨	<b>3.4</b>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, 과대 행위를 금지하고, 기만성 문구나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글자 크기 또는 색상의 차이로 소비자에게 구매 할 식품 혹은 식품의 특정 성질과 기타 제품을 혼동하도록 오도하여서는 안 됨	
<b>3.5</b>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문구, 그림, 부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구매할 식품 또는 식품의 어떤 성질과 다른 제품을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됨	<b>3.5</b> 문구, 그림, 부호 등 방식으로 식품 또는 식품 중 특정 성분이 질병예방, 치료 효과를 갖추고 있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됨. 보건식품이 아닐 경우, 기능성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됨	
<b>3.8.1</b> 병음(발음기호)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가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게 표기 되어서는 안 됨	<b>3.6.1</b> 병음(발음기호)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의 높이가 상응하는 규범한자보다 높게 표기 되어서는 안 됨(등록상표 제외)	
-	<b>3.6.3</b>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은 중문과 외국어 또는 번체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의미가 거의 일치해야 함. 본 표준 및 기타 법률, 법규, 식품안전표준 요구에 따라 규정한 강제성 표시내용의 규범한자가 외국어 또는 번체자와 대응되어야함(등록상표, 수입식품의 제조사 및 주소, 해외경소상의 명칭 및 주소, 홈페이지 제외). 비강제성 표시 내용 및 기타 식품 표준 중의 규정내용 표시 여부는 업체에서 결정할 수 있음. 같은 표시 면에 있는 외국어 또는 번체자의 글자 높이가 상응하는 규범한자보다 높게 표기 되어서는 안 됨(등록상표 제외)	내용 추가
<b>3.9</b> 예포장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(최대 표면적 계산법은 부록A 참조)이 35cm <sup>2</sup> 이상이면 강제 표시내용의 문자, 부호, 숫자의 높이는 1.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	<b>3.7</b> 예포장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(최대 표면적 계산법은 부록A 참조)이 40cm <sup>2</sup> 이상이면 강제 표시내용의 문자, 부호, 숫자의 높이는 2.0mm보다 작아서는 안 됨	
-	<b>4.1.2</b>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수입 예포장식품의 라벨에 식품명칭, 성분표, 내용량 및 규격, 경소상 또는 수입상, 대리상의 명칭, 주소 및 연락처, 생산국(지역), 생산일자 및 유효기한, 저장조건 등 내용을 간체중문으로 표시해야 함	내용 추가
<b>4.1.3.1</b> 예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해야 함. 배합원료표의 각종 배합원료는 4.1.2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식품첨가제는 4.1.3.1.4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칭을 표시함	<b>4.3.1</b> 예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해야 함. 배합원료 중의 각종 배합원료는 그의 속성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식품첨가제는 4.1.3.1.4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칭을 표시함	
<b>4.1.3.1.1</b> 배합원료표는 '배합원료' 또는 '배합원료표'를 색인어로 사용해야 함.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이미 기타 성분(술, 간장, 식초 등 발효 제품)으로 바뀌었을 경우, '원료' 또는 '원료 및 보조 재료'를 사용하여 '배합원료' 또는 '배합원료표'를 대체할 수 있으며 본 표준에 해당하는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종 원료, 보조 재료 및 식품첨가제를 표기함. 가공보조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	<b>4.3.1.1</b> 배합원료표는 '배합원료' 또는 '배합원료표'를 색인어로 사용해야 함.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이미 기타 성분으로 바뀌었을 경우, '원료'를 사용하여 '배합원료' 또는 '배합원료표'를 대체할 수 있음	
-	<b>4.3.1.3.2</b> 복합원료 중의 전부 또는 일부 최초 배합원료가 식품 중의 기타 배합원료와 일치할 경우, 관련된 배합원료의 합계를 완제품 내 포함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할 수 있음	내용 추가

현행 GB7718	수정안	비고
-	<b>4.3.1.4.2</b> 식품첨가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능분류명칭과 함께 표시할 경우,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40cm <sup>2</sup> 이하이면 국제번호(INS번호)를 사용하여 식품첨가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대체할 수 있음. 또한 특정 식품첨가제의 국제번호가 없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목적으로 그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	내용 추가
-	<b>4.4.1.1</b> 식품 라벨 또는 식품 설명서에서 언급하는 특정 배합원료 또는 성분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, 특별히 강조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첨가량 또는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. 다만, 강제성 표준 또는 제품 집행 추천 국가표준, 업종표준, 지방표준 및 기타 법률, 법규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표준에 따라 집행함. 1.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 또는 기타 경고 용어 또는 경고문에 언급하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 2. 식용방법 또는 배합건의 중 언급되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 3. 제품의 성질과 형상, 풍미, 맛 등 감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	특히 강조하는 상황을 명시함
-	<b>4.4.1.3</b> 맛, 풍미 등을 구분하기 위해 포장에 인쇄한 표시 또는 그림은 특정 식품 또는 식품 배합원료와 관련되면 특별히 강조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. 식품향료로 배합 조제된 맛일 경우, 관련된 원료 또는 식품의 실물사진을 사용하면 안 됨	내용 추가
-	<b>4.4.2.1</b> "无", "不含" 등 용어를 사용 시, 해당된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함유량은 "0"이어야 하며, 기타 법률,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 중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,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함. 식품첨가제, 오염물 및 법률, 법규 및 표준 중에 규정된 첨가 금지 물질 또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일 경우, "无", "不含" 등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됨(함유량 표시 동의어는 부록C 참조)	내용 추가
-	<b>4.4.2.2</b> "不添加", "不使用" 등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됨. 기타 법률, 법규 또는 국가식품안전표준 중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,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함	내용 추가
<b>4.1.4.3</b> 식품명칭 중에서 언급하는 특정 배합원료 또는 성분은 라벨 중에 특히 강조하지 않을 경우, 그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중의 함유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	-	삭제, 식품명칭 중의 배합원료 또는 성분은 정량으로 표시
-	<b>4.11.1</b> 다음의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배합원료를 사용할 때 배합원료표에 표시하거나 배합원료표 부근에 추가 설명을 덧붙여야함(표시방식은 부록E 참조) a)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(밀, 호밀, 보리, 귀리, 스펀트밀 또는 교배 품종 계열) b)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(새우, 바닷가재, 게 등) c) 어류 및 어류 제품 d) 알류 및 알류 제품 e) 명종 및 명종 제품 f) 대두 및 대두 제품 g) 우유 및 유제품(유당 포함) h) 견과 및 씨앗류 제품 위의 배합원료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	추천성 조항을 강제성 조항으로 변경
<b>4.1.11.3.2</b> 기타 예포장식품에 영양 라벨이 필요할 경우, 표시 방식은 관련 법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함	<b>4.11.2</b> 위의 식품 외에, 영양라벨의 표시방식은 GB 28050에 따라 집행함	
-	<b>4.12.5 특수 식용 대상 표시</b> 다음 항목 외에 라벨 및 설명서에 특수 식용 대상에 관련된 표시를 하면 안 됨 a) 특수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식품 b) 국가표준, 업종표준, 지방표준에 규정된 특정 식용 대상 식품 c) 충분한 과학근거에 따라 각종 식용 대상의 특수 영양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식품	내용 추가
<b>4.3.2</b> 예포장식품의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10cm <sup>2</sup> 보다 작을 경우(최대 표면적 계산법은 부록A 참조), 제품명칭, 내용량, 생산자(또는 경소상)의 명칭 및 주소만을 표시할 수 있음	<b>6.2</b> 예포장식품의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20cm <sup>2</sup> 보다 작을 경우(최대 표면적 계산법은 부록A 참조), 제품명칭, 내용량, 생산자(또는 경소상)의 명칭 및 주소만을 표시할 수 있음	
-	<b>7.2.2</b> 수입 예포장식품 원 라벨에 언급하는 적용 대상 섭취량, 식용방법 등 정보는 상응하는 중문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중문 내용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	내용 추가
-	<b>7.3.2</b> 수입식품의 품질을 표시할 경우, 원산국(지역)의 표준 또는 법규 중에 규정하는 등급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	내용 추가
-	<b>7.3.3</b> 품질 등급을 표시할 때는 숫자 등급에 한하지 않음	내용 추가
<b>4.4.3</b> 알레르기 유발물질		
<b>4.4.3.2</b> 가공 과정에서 상기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이 사용될 경우, 배합원료표 부근에 추가로 표시해야 함		강제성 조항으로 변경